

대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2004. 03. 19. 최초제정	2017. 10. 01. 부분개정
2004. 06. 15. 부분개정	2018. 04. 01. 부분개정
2005. 03. 02. 부분개정	2019. 04. 01. 부분개정
2006. 04. 01. 부분개정	2019. 08. 09. 부분개정
2010. 09. 01. 부분개정	2019. 10. 01. 부분개정
2012. 08. 01. 부분개정	2020. 09. 01. 부분개정
2013. 05. 01. 부분개정	2023. 07. 01. 부분개정
2016. 04. 01. 부분개정	2023. 09. 18. 부분개정
2016. 12. 20. 부분개정	2024. 11. 08. 부분개정
2017. 09. 01. 부분개정	2025. 08. 01. 부분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정관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9.01.>

제2조(기능) 산학협력단의 산하 사업을 수행하는 실무 부서의 업무를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기획·조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그 기능으로 한다.<개정 2020.09.01.>

제3조(업무) 산학협력단은 대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09.01.>

1. 산학협력 수요와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과 홍보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된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협력연구소간의 상호 협력에 대한 지원
4. 산학협력단 산하 부설연구소 및 센터 평가 및 지원

제2장 조직

제4조(단장) ①산학협력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한다.<개정 2020.09.01.>

②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산학협력단의 업무 및 하부조직을 총괄한다.<개정 2020.09.01.>

제5조(조직) ①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며, 각 사업단 및 센터(팀)에는 사업단장, 사업부단장, 센터(팀)장을 둘 수 있으며, 조직구성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0.09.01., 2023.07.01., 2025.08.01.>

②산학협력단의 각 사업단 및 센터(팀)에는 비전임교원, 직원, 연구원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09.01., 2023.07.01.>

③산학협력단 소속의 직원 및 연구원 등에 대한 임용, 보수, 근로조건 등은 산학협력단 정관 제8조,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산학협력단 보수지급 에 대한 지침에 따른다.<개정 2020.09.01.>

④기타 필요한 사항 및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의 제 규정 등을 준용한다.<개정 2020.09.01.>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구성) ①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0.09.01.>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09.01.>

③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09.01.>

④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20.09.01.>

제7조(심의)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09.01.>

①산학협력단 운영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②산학협력단 운영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③산학협력 및 산학협력 관련 사업에 중요하다고 위원장이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개정 2020.09.01.>

1. 대응자부담(현금, 현물)사업<신설 2020.09.01.>

2. 간접비 계상금이 없는 사업<신설 2020.09.01.>

3. 사후정산 대상 사업<신설 2020.09.01.>

4. 위 호외 기타 주요사항<신설 2020.09.01.>

④산학협력단 및 위·수탁협약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개정 2020.09.01.>

⑤교외 연구사업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0.09.01.>

⑥산학협력단 정관 및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개정 2020.09.01.>

⑦기자재 선정 심의에 관한 사항

⑧ 삭제 <2020.09.01.>

⑨산학협력단 예·결산에 관한 사항

⑩재산처분에 관한 사항<신설 2020.09.01.>

제8조(자문)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자문한다.<개정 2020.09.01.>

①산·학·연·관 협동체제 구축에 필요한 기금조성 및 관리

②산·학·연·관 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

③산·학·연·관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구축

④기타 산·학·연·관 협력에 관한 주요사항

제9조(소집 및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 한다.<개정 2020.09.01.>

제4장 회계

제10조(회계관리) ①산학협력단은 사업별 회계 관리를 해야 하고,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09.01.>

②회계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을 준용하며, 기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의 회계처리 규칙에 준한다.<신설 2020.09.01.>

부 칙

이 규정의 효력발생 시기는 산학협력단 법인설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발령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인사발령 사항에 대한 경과 조치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5조의 사업단(센터 및 팀) 중 별표 1의 자율협약사업센터, 기업신속대응센터는 대학 직제규정 개정에 따라 2019년 3월 1일부터 신설된 것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5조의 사업단(센터 및 팀) 중 별표 1의 대학혁신지원사업단, 혁신지원사업센터, 의료시물레이션센터는 대학 직제규정 개정에 따라 2019년 6월 17일부터 신설된 것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5조의 산단기획팀은 대학 직제규정 개정에 따라 2019년 8월 15일부터 개정된 것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제5조(조직)의 조직구성[별표 1]은 대학직제규정 개정에 따라 2023년 3월 1일부터 개정된 것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제5조(조직)의 조직구성[별표 1]은 대학직제규정 개정에 따라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사업운영팀과 대학혁신지원Ⅱ유형사업단 사업운영팀은 2023년 8월 1일부터, 대학혁신지원Ⅱ유형사업단 HiT CARE - MATE센터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신설된 것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제5조(조직)의 조직구성[별표 1]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직도 <개정 2023.07.01., 2023.09.18., 2024.11.08., 2025.08.01.,>

